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7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7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10조의5)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특성 등 고려
-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조항 신설(안 제10조의6)
 -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
 - 체육회는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남섭)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평창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체육단체”의 정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6에서는

평창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흡한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3장 및 제4장을 각각 제4장 및 제5장으로 하고, 제10조의2 앞에 “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을 삽입한다.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제10조의7 및 제10조의8로 하고,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5) 제1항중 “제10조의4제2항”을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u></p>
<p>제3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조(설치) <u>법 제5조</u>----- ----- ----- ----- ----- ----- -----.</p> <p><u>제3장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u></p>
<p>제10조의2 ~ 제10조의4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의2 ~ 제10조의4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5(평등한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유형,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제10조의6(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u></p>

제10조의5(보고·검사) ① 군수는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의6 (생략)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1조 ~ 제17조 (생략)

제4장 보칙

제18조 ~ 제19조 (생략)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 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의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보고·검사) ① -----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6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8 (현행 제10조의6과 같음)

제4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11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제18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